■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사건번호		결정 일자	
결정 주문			
배상금지급 계좌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동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2.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인낙·조정조서 정본(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대리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에 지정한 예금계좌 확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서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인낙·조정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상결정에 동의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